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: IBK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주요 변경사항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(31.87%→31.49%)
- ②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③기업공시서식 변경사항 반영
-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- ⑤해외 업무위탁 책임운용역 변경 (Albert Chu → David Intoppa)

3. 시행일: 2023년 9월 1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정정요구 ·명령 관련여부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용어변경	아니오	21.10.21 자본시장 법 개정	제0영업일 대차대조표	0영업일 재무상태표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아니오	22.08.30 기업공시 서식 변경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(이하 생략)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(이하 현행과 같음)
[요약정보] 투자자 유의사항	아니오	22.08.30 자본시장 법시행령 개정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 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이하 생략)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경과하였 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이하 현행 과 같음)
[요약정보] 주요 투자위험	아니오	22.08.30 자본시장 법시행령 개정	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(이하 생략)	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 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 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 자기구의	아니오	-	-	연혁추가

연혁				
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정기갱신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-</p> <p>※업무 위탁 운용회사인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, LLC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개요 Albert Chu</p> <p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-</p> <p>다.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* 업무 위탁 운용회사인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, LLC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 변경 내역</p> <p>-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 <p>※업무 위탁 운용회사인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, LLC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개요 David Intoppa</p> <p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 <p>다.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* 업무 위탁 운용회사인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, LLC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 변경 내역</p> <p>운용역 운용 기간 정보 업데이트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아니오	<p>21.10.21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 <p>23.02.20 기업공시 서식 개정 반영</p> <p>21.10.21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[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(1)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가. 투자대상</p> <p>3.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<신설></p> <p>나. 투자제한 (1)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나)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중 후순위 사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</p>	<p>[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(1)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p> <p>가. 투자대상</p> <p>3.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주3)증권의 대여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</p> <p>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p> 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 <p>나. 투자제한 (1)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나)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중 후순위 사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(이하 현행과</p>

		22.08.30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이관이 (이하 생략)</p> <p>[모펀드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중략)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(이하 생략)</p>	<p>같음)</p> <p>[모펀드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(중략)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않으면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아니오	정기갱신	<p>나. 위험관리 <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관리> 4)환헤지의 비용 등 -</p>	<p>나. 위험관리 <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관리> 4)환헤지의 비용 등 - 최근 현황 업데이트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아니오	22.08.30 자본시장 법시행령 개정 23.02.20 기업공시 서식개정 정기갱신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31.87%</p>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증권대차 거래 위험 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31.49%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아니오	정기갱신	-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	아니오	22.12.31 소득세법 개정사항	<p>나. 과세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■ 세액공제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</p>	<p>나. 과세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■ 세액공제: <u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</u></p>

<p>사항</p>		<p>반영</p>	<p>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「소득세법」(중략)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^(주1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(중략)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^(주2)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(중략)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^(주3) <p>※(주1) ~ (주3) (생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금수령시 과세: <추가> ■ 분리과세한도: 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<추가> 	<p><u>금액 이내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<u>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</u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금수령시 과세: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</u> <u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u> ■ 연금소득 분리과세: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</u> <u>의료 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</u> <u>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</u> <p>단, 연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</p> <p>※ 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한다.</p> 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
-----------	--	-----------	--	---

			<p>(6)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: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.</p> <p>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(이하 생략)</p> <p>②과세 이연: (생략)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(이하 생략)</p>	<p>(6)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: <u>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 공제</u></p> <p><u>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u></p> <p>②과세 이연: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<u>연금인출,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</u>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	아니오	23.02.20 기업공시 서식개정 및 정기갱신	가. 요약재무정보 <신설>	가. 요약재무정보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주식의 매매회전을> ※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거래비용 및 회 전율 나. 재무상태표 다. 손익계산서 재무현황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현황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
3.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	아니오	정기갱신	-	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 별수익률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	아니오	정기갱신	-	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 최근현황 정보 업데이트
4. 일반사무관 리회사에 관한 사항	아니오	사명변경 반영	가. 회사의 개요 회사명: 신한아이타스(주) 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	가. 회사의 개요 <u>회사명: 신한펀드파트너스(주)</u> <u>주소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,19,20층</u>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
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아니오</p>	<p>22.08.3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1) ~ 2) (생략)</p> <p>3)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1) ~ 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아니오</p>	<p>22.08.3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</p>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/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/ (중략) /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월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/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/ (중략) /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월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: IBK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주요 변경사항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(31.87%→31.49%)
- ②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③기업공시서식 변경사항 반영
-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- ⑤해외 업무위탁 책임운용역 변경 (Albert Chu → David Intoppa)

3. 시행일: 2023년 9월 1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정정요구 ·명령 관련여부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용어변경	아니오	21.10.21 자본시장 법 개정	제0영업일 대차대조표	0영업일 재무상태표
[요약정보] 투자자 유의사항	아니오	22.08.30 자본시장 법시행령 개정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 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이하 생략)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경과하였 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이하 현행 과 같음)
[요약정보] 주요 투자위험	아니오	22.08.30 자본시장 법시행령 개정	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(이하 생략)	해지 위험: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 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 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(이하 현행과 같음)
투자신탁 결산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등	아니오	정기갱신		- 투자비용 관련 정보 - 운용전문인력 현황 자료 - 성과 관련 정보 등